

의안 번호	245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b>심 사 보 고 서</b>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8. 22.(금) 김태욱 의원 외 9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2.(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3.(수)

## 2. 제안설명 요지 (김태욱 의원)

### 가.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출석요구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실질적 감사 및 조사권 확보와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한 통지 절차 및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 발생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5항)
- 과태료 부과·징수 처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명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6항)
-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합성 확보
  - 허위증언 → 거짓증언 (안 제9조제4항)
  - 기립하여 → 일어서서, 선서문 → 선서서 (안 제10조제3항)
-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 2)

####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4조, 제4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홍숙)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인에게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의회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4. 심사결과: 원안가결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